
「」

[2010. 3.19] [22075 , 2010. 3.15,]
() 02 - 2023 - 7337

1 () 「」
.< 2008.6.11 >

2 (가) 가
가 「」 (" ") 7
.< 2008.6.11 >

1 가 ,
.
1 ,
.

3 () 13 2 1 ()
" ") 5 .< 2008.2.29, 2010.3.15 >
.< 2008.2.29, 2010.3.15 >

8 .
.< 2008.2.29, 2010.3.15 >

4 (" . ") .< 2008.2.29, 2010.3.15 >

4 ()
1.
가.
.
가
2.
가. .

가

3 2

1 2

5 () • 13 2 2 (" ") 10

. < [2008.2.29, 2010.3.15](#) >

• 13 2 5 가 3

. < [2008.2.29, 2010.3.15](#) >

6 () 13 3 (" ") 1 1 10

, 가 . < [2008.2.29, 2010.3.15](#) >

. < [2004.5.24, 2006.6.12, 2008.2.29, 2008.6.11, 2010.3.15](#) >

1.

2. 3

3. 3

4. 「 」 2 (" ")

5.

. < [2006.12.29, 2008.2.29, 2010.3.15](#) >

1.

2.

3. 17 1 가

4. 「 가 」 74

5.

7 () 13 3 (" ")
) 1 1 10 . 가 , 가

1.

2. 27

3. . . (" . ")

4. .

5.

6.

1. .

2.

3.

4. . 가

8 (.) . 14 2

. (" . ") . <

[2010.3.15](#)>

.

1. . . .

2.

. 가 1 .
< [2010.3.15](#)>

[[2008.12.31](#)]

9 () .

가 18

, , 가

가 . < [2008.2.29, 2010.3.15](#)>

. . . (.) 가

< [2008.2.29,](#)

[2010.3.15](#)>

. . . 가

1

. < [2008.2.29, 2010.3.15](#)>

10 () 18 3

< 2008.2.29, 2010.3.15 >

1

- 1.
- 2.
- 3.

11 () 19 1 (" ")

< 2008.2.29, 2010.3.15 >

12 ()

19 2

21 1

「 」 55

가 (" 가 ")

< 2008.2.29, 2008.6.11, 2010.3.15 >

1

(" ")

가 < 2008.2.29, 2010.3.15 >

13 () 가 (" 가 ")

2

<

2008.2.29, 2010.3.15 >

1

- 1.
- 2.

14 ()

1. 22 1

- 2.
- 3.
- 4.

15 () 가

가

< 2008.2.29,

2010.3.15 >

16 () 가

2

. < [2008.2.29, 2010.3.15](#) >

1

1.

2.

가

17 () 21 4

18 () 22

1

1. (" ")

2.

19 () 22

1.

2. 24 ()

20 () 가 22 1

가

. < [2008.2.29, 2010.3.15](#) >

1

3

가 1

. < [2008.2.29, 2010.3.15](#) >

21 () 가 22 2

22 4

(" ")

12

22 () 가 22 4

15 1

23 (가) 22 5 6

가 1 .

1.

2. 가

3. 가 가

가 22 5 가

, .
, 10 .

24 () 28 1

(" ")

1. . . .

2. .

3. , , 가

4.

28 2

가

,
1 2

25 () 36 3 1

, . < [2008.2.29,](#)

[2010.3.15](#)>

1 「 . 」 2 4

() .<

[2008.6.11](#)>

1 .< [2008.2.29, 2010.3.15](#)>

26 ()

36 4

. < [2008.2.29, 2010.3.15](#) >

26 2(가) 47 2 1 6

. < [2008.10.29, 2009.12.14, 2010.3.15](#) >

1. (「 」 「 」) 2

가 1

2. 「 」 2 5 2
가 3

3. 「 」 2 5 (3) 2
가 1

4. 「 」 5 1 2

5. 「 」 4

6. 「 . 」 5 1

7. 「 」 11 , 「 」
「 2 12 , 「 」

8. 「 . 」 5 가 5

9.

10. . .
[[2008.6.11](#)]

27 (가) 가 가 51 3

. 가 1 .

1.

2.

가 가 51 4 .

1.

2. ()

28 () 57 2 .

1 . < [2008.2.29,](#)

[2010.3.15](#) >

< 2008.2.29, 2010.3.15 >

29 () 62 2 .

[2008.6.11]

< 22075 ,2010. 3.15 >

1 () 2010 3 19 . < >

2 () <117>

<118>

3 1 • 2 • 4 5 , 5 1 2 , 6 3 4 5 ,
8 1 3 , 9 1 3 , 10 1 , 11 , 12 1 2 , 13 1
, 15 2 , 16 1 , 26 , 26 2 9 10 , 28 2 2

" 가 " " " .

6 2 " 가 " " " .

6 3 3 " 가 " " " .

20 1 4 , 25 1 • 3 28 1 " 가 " " "

<119> <187>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수입금액(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	50 이하	30,000
2	50 초과 ~ 100 이하	45,000
3	100 초과 ~ 200 이하	6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75,000
5	300 초과 ~ 400 이하	90,000
6	400 초과 ~ 500 이하	115,000
7	500 초과 ~ 600 이하	130,000
8	600 초과 ~ 700 이하	14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150,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16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170,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175,0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18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185,0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190,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195,0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2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205,0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210,000
20	9,000 초과	215,000

[별표 2] <개정 2010.3.15>

과태료부과기준(제29조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 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1호	200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2호	200
3. 법 제39조 또는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3호	100
4. 법 제51조제3항, 법 제53조 또는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4호	150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5호	150

비 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